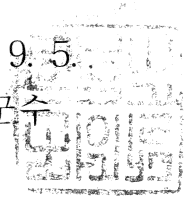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9. 5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’과 관련,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변경(안 제5조)
-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안전 발생 시 위원회 구성·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제3항)
- 위원 임기 조항 삭제(안 제19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- (1)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1조의 2
- (2)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2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기타

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입법예고(2023. 8. 1. ~ 8. 21.) 결과 : 의견 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)”을 “(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)”로 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심의·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전의 심의·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촉행위에 관한 특례) 이 조례의 시행 후 제1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될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군수의 위촉행위는 종전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존속 중인 위촉위원에 대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촉행위를 한 때 그 위촉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 군수는 법 제 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(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)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 1.~ 4. (생략)	제5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 - - - - - - - - - - - (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)- - - - - - - - - - - -. 1.~ 4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구성) ① ~ ② (생략) ③ <신 설>	제18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심의·자문의 필요성이 있을 때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의 심의·자문에 대한 의결 절차 종료 직후 자동 해산한다.</u>
제19조(위원의 임기) ①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u> ② <u>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.</u>	<삭 제>
제21조(회의) ① <u>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~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 ② ~ ③ (생략)	제21조(회의) ① <u>위원회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</u> 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☐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11조의2(시·도 양성평등위원회)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시·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·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☐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

제23조(양성평등주간 행사) ①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.